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10. 28.(수) 10:3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32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 기타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안건 가> ‘(주)매일방송 행정처분 관련 의견청취’ 건은 현재 별도 심사를 앞두고 있고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타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공개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비공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0-57-257~260)**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광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주)티브이씨, (재)극동방송 등 4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입니다. 시정명령(안)입니다. 광주방송은 ‘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 중 미이행 금액 23억 3,000만 원을 ‘23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연도별 이행실적을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년 결산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방송사는 요지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OBS는 미이행 금액 93억 원을 ‘25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티브이씨는 미이행 금액 5억 7,000만 원을 ‘23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재)극동방송은 ‘17년 극동여수FM방송국 재허가 조건에 따른 ‘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 미이행 금액

3,000만 원을 '23년 말까지, '18년 극동전북FM방송국 허가 조건에 따른 '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 미이행금액 5,000만 원을 '23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광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주)티비씨, (재)극동방송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경과사항은 서류로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 (재)허가 조건 및 위반사항입니다. 광주방송입니다. 광주방송은 '16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12%)'을 집행하여야 하나 '19년도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비율은 9.2%로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에 미달되어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OBS는 '16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의 '19년도 제작투자비 247억 원을 집행하여야 하나 '19년도 제작투자비 실적은 154억 원으로 OBS가 제출한 최소 제작투자비에 미달되어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주)티비씨는 '16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14%)'을 집행하여야 하나 '19년도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비율은 12.9%로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에 미달되어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재)극동방송입니다. 극동 여수 FM방송국은 '17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확대 계획'의 '19년도 제작투자비 7,500만 원을 집행해야 하고, 극동전북FM방송국은 '18년도 신규허가 조건에 따라 '제작비 투자 확대 계획'의 '19년도 제작투자비 1억 원을 집행하여야 하나, '19년도 제작비 투자실적이 여수FM은 4,500만 원은, 전북FM은 5,000만 원으로 최소 제작비 투자 금액에 미달되어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피심인 의견입니다. (주)광주방송은 광고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6년도부터 추진한 신사옥 건설에 따른 분양 수입으로 '17년부터 '19년 동안 매출액이 평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러한 매출 급증으로 '19년 제작투자비 이행금액이 10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광주방송 2년치 제작비 수준이어서 이행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으며, 제작투자비의 추가적인 증가는 안정적인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금번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심사숙고를 요청하였습니다. OBS는 '19년 매출이 162억 원 감소하여 경영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재허가 조건 이행이 어려웠고, 코로나19로 광고매출 하락과 지역사업 취소 등 매출급락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93억 원 제작투자비 추가 시정명령을 부과받을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 시정명령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견입니다. (주)티비씨는 '19년 매출 중 광고매출은 12억 6,000만 원 감소한 반면 기타사업매출액은 46억 7,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기타사업매출에서 14% 이상을 제작투자비로 투입할 수 없어서 이행실적 미달이 발생하였으며, 기타사업매출은 방송과 무관한 매출로 원가율이 높아 14% 이상을 제작비로 투입할 경우 해당사업은 적자사업이 되며, 지상파방송사법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현행 재허가조건 "전체 매출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비율 14% 이상"을 "방송사업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비율"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재)극동방송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게 된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미이행 제작비를 기간 내에 투자하여 위반 사실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만 전북FM방송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시 '21년까지 미이행 제작비를 모두 투자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차기 재허가 유효기간 내로 이행기간을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프로그램 제작비로 투자하도록 하는 재허가 조건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정명령 재고 및 재허가 조건 개선을 요청하고, "방송사 경영악화에 따라 정액으로 제시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이행

하기 어렵고 이미 부과받은 시정명령금액 부담이 있어 시정명령이 추가될 경우 방송사 정상경영이 어렵다”는 등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제작비 투자 규모와 관련한 재허가 조건 개선 문제는 그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고, 기 부과된 재허가 조건을 미이행한 것에 대한 조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허가 조건을 준수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광주방송, OBS, (주)티비씨, (재)극동방송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19년 프로그램 제작투자비 미이행 금액을 단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것보다 기 부과된 콘텐츠 투자 관련 조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허가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극동전북FM경우 재허가 기간이 '21년이므로 (재)극동방송 본사 재허가기간인 '23년까지 집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OBS는 '19년 재허가 시 '17년, '18년 프로그램 제작투자비 미이행 금액을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투자하도록 하는 재허가 조건이 부과된 상황으로, 이번 시정명령 금액까지 남은 재허가기간 동안 투자하도록 할 경우 방송국 운영비용의 불균형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5년 내에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10월 중으로 시정명령을 통보하겠습니다. <붙임>으로 피심인 의견제출 주요내용 1부, 피심인 제출의견 각 1부, 관련 법령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상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2020-57-261)**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인터넷이용자정책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금융결제원, (주)코스콤의 총 4개 ‘공인인증기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아래의 지정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지정조건은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 개선필요사항을 개선하여 2020년 12월 18일까지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결과를 확인하여 개선이 완료된 후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교부하며, 지정서를 교부받은 기관은 그 시점부터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5, 제15조 및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등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후에도

본인확인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유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관리 결과 도출된 개선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기관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제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인증서 기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올해 6월 9일 과기정통부에서 공인인증제도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올해 7월 21일에는 한국정보인증(주) 등 4개 공인인증기관이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기관 일반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신청기간 대상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8일 신청기관에 심사결과 통보 및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입니다.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방법에 따라 심사대상 범인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총 17개의 세부심사 기준과 같은 법 고시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의 총 92개 항목의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은 크게 3가지로 먼저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은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 운영과 접속정보 위·변조 방지 등을, 설비규모의 적정성은 보안설비와 재난방지 설비 등을, 기술적·재정적 능력은 정보보호 분야 전문기술 인력 확보와 자본금 80억 원 이상 확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금융결제원, (주)코스콤의 총 4개 기관은 본인확인기관 지정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 미흡 등이며, 신청기관별 개선필요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평가기준 항목에 대한 미비 정도가 중대하지 않거나 빠른 시일 내 보완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적절한 개선조치 완료 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사위원회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금융결제원, (주)코스콤의 총 4개 기관은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이 일부 미흡하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 개선하거나 단기간 내 개선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붙임>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개선완료를 조건으로 지정하고, 확인 후 지정서 교부를 한다는 의견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제안된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기관별 개선완료 여부 확인을 거쳐서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붙임>으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관련 규정과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신청 기관별 심사위원회 평가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별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코스콤의 경우를 보면 위조·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이 2021년 3월까지 개선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는 조치 예정 시일이 뒤로 가 있는데 현재 이런 서비스를 해도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12월 10일자로 공인인증제도는 없어지지만 공인이라는 말이 없어질 뿐이지 그 인증업무는 계속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사설 인증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고 본인확인기관 지정하는 것은 3월 이후로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심사위원회 의견입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평가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지역민방에 대한 수중계 편성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경과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3> 주요 개정사항, <가> 현행 규정입니다. 방송법 제69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 지역민방이 다른 1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TV의 경우 지역민방의 허가차수에 따라 수중계 편성비율을 차등 고시하고, 라디오의 경우 11개 사업자 중 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TV와 동일하게 허가차수에 따라 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인·경기방송의 경우 3차 민방과 동일한 수중계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정 방향입니다. 방송법령에 따르면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은 ‘방송사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프로그램 편성고시는 지역민방의 ‘허가차수’에 따라 편성비율을 정하고 있어 수중계 편성비율이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방의 경영상태가 현행 수중계 비율 결정 당시인 2005년과 달라지고, 그간 방송환경이 변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변경하며, 각 방송사의 방송사업매출액을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으로 설정하고 방송사업매출액 구간별로

비율을 차등하는 것입니다. 4쪽 <다> 개정안입니다. 먼저 편성비율은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 원 이상인 구간의 수중계 편성비율 68%를 기준으로 50억 원 구간별로 1%p씩 증가하고 방송사업매출액 200억 원 이하부터는 50억 원 구간별로 2%p씩 증가합니다.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상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방송사업매출액별 수중계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상 사업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송사업자의 법인명을 현행화하고 지상파 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대상 사업자에서 '20년도 3월에 폐업한 경기방송을 제외합니다. 단서조항입니다. 급격한 수중계 비율 변화로 인한 업계의 과도한 부담·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전년대비 최대 비율변화를 1%p로 제한합니다. 마지막 경과규정입니다. 지역민방 사업자의 편성계획, 경영전략 수립 등을 고려하여 고시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규정합니다. 5쪽입니다. 지역민방 수중계 관련 편성고시 현행 규정과 개정된 후의 규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조제1항은 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6쪽 제2항은 라디오방송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며, 제4항은 방송사업매출액에 관한 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쪽 <4> 항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지역민방에 대한 수중계 편성비율 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하는 안인데 이 시행령에 따라서 방송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해서 수중계 비율을 정하도록 했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가차수에 따라서 정하던 그런 폐단을 이제서야 개선하게 되어서 만사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참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여러 지역민방에서 공통적으로 이 문제의 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만큼 업계의 의견을 잘 수렴한 정책 실현으로 업계의 환영을 받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업계의 건의사항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보다 신속하게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 매출액과 수중계 황금비율의 묘안을 찾아 내는데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동의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여기에서도 아까 광주방송이나 또 대구방송 이런 곳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뭔가를 정할 때 그 분모가 매출액이 되었을 때에 오는 어떤 혼란이나 무슨 문제 같은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모가 매출액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안전판으로 2%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 같은 것들을 관계부처 협조할 때 잘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매출액은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은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개안전 심의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비공개 안전 심의가 남아 있는데 애초에 예고드린 대로 진술인들의 출석 문제 등을 고려하여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4분 정회 】

【 14시 32분 속개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님,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오전 회의를 속개한 관계로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 3. 속개 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기타사항

가. (주)매일방송 행정처분 관련 의견청취 (비공개)

【 17시 00분 】

### 5.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6.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5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7시 01분 폐회 】